

‘납골시설 30명 제한’ 왜 문제인가

가족단 조성해도 120구 수용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납골시설에 대해 이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과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면적을 100㎡(30평)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무리한 규제... 화장문화 후퇴 재단법인 설립 현실성 없어 “정부 환경훼손 우려는 억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만들 경우 30평 이상 시설건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제한 조항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지만, 이 조항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둘째는 실효성 측면이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30평 규모는 납골당의 경우 개인단의 점유면적을 최소 1기당 1평으로 보더라도 30구 밖에 안치할 수 없으며, 가족단의 경우 1기당 6구 안치를 기준으로 점유면적을 최소 1.5평으로 잡더라도 1기당 15기에서 20기 이상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1기당 6구 안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여기 이상을 넘기는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납골시설이 지속성을 갖고 운영될 수 없다는 문제가 부딪힌다. 달리 말하면 납골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한 단체가 시설 1개소 이상 건립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시설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곧 화장·납골을 권장하



◇지난 5일 종로 YWCA에서 열린 정묘문화 공청회에서 관계 전문가와 학자들은 종교단체 납골시설의 30명 규제조항이 불합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는 법률 취지와도 완전히 어긋난다. 대규모 납골시설이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논리도 ‘억지’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정석 자문위원은 “제한면적 3평에 1구를 수용하는 분묘와 1.5평에 6~8구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비교하면 납골시설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고제 전환 효과없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크게 짓고 싶으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된다”는 논리로 이같은 지적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 불교계의 납골시설 건립 현실과 비뚤어질 때 종교계의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을 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말하

는 법인은 일반법인이 아닌 ‘납골시설 설치·관리 목적’의 법인이어야만 된다. 즉 조계종의 경우 사찰들이 종단의 재단법인을 이용할 수도 없다. 또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 해도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도 법인신고까지 해야 한다. 이것은 납골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볼 때는 결국 허가제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납골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번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불교계에서는 더 이상 납골시설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영우 기자(mwhan@buddhopia.com)

어느 절이 동참하겠나

더욱이 문제제기의 주체들이 불교계 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와 관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이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를 빚고 있는 조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 ‘시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이다. 이 조항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우선하는(상위법)

5일 열린 조계종 149회 임시총회에 종헌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 사면은 불가능해졌다. 이번 총회는 회기가 5일이지만, 내년도 중앙총무 기관 예산안과 관련법률 개정안만 통과시키고 하루만에 서둘러 폐회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종헌 개정안 내용을 놓고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총무원이 지난 3월 총회에 낸 개정안에서는 62년 통합종단 이후 별다른 사면·경감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 총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94·98년 종단사태에 관련되어 벌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사면 이후 10년간 공직 취임을 못하게 했다. 몇 가지 변화된 사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했지만, 다음 회기 이월을 놓고 종회의원들 사이에 논란을 벌이는 데 그쳤다. 이후 통과 여부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목어

‘새별’들의 예언

도시의 밝은 조명 때문에 서울의 밤하늘에서 종제 별을 볼 수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밝은 지상에 눈길을 보내라 밤하늘을 쳐다보지 않아 그렇지 맑은 날 밤하늘로 눈길을 돌리면 아직 우리는 적어도 2등 별까지는 볼 수 있다. 겨울철인 요즘이라면 저녁 7시쯤 남동쪽 하늘에 오리온좌가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도 그 아래서 반짝인다. 밤 동안 서서히 움직여 새벽 5시쯤이면 남서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경이롭게 관찰할 수 있다. 날마다 위치가 변하는 화성이나 목성 같은 행성, 또는 혜성을 제외하면 하늘에는 대부분 이 같은 별이 별들이 성좌를 이루어 하늘을 수놓는다.

그 하늘에 새별이나 마이너스 1등급별보다 훨씬 크고 달보다는 작은 새별 하나가 곧 나타날 모양이다. 미국 등 세계 15개국 이 힘을 모아 건설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커다란 날개 같은 태양전지판이 지금 활짝 나래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폐기 직전에 있는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도 가끔 새별처럼 반짝이며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번의 우주정거장은 그 크기가 미르와 비교되지 않는다.

어디 우주정거장뿐이겠는가. 우주관광을 위한 우주호텔이며 우주농장 등 앞으로 하늘의 별로 등장할 우주선 계획은 끝도 없다.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이 새롭게 속속 나타날 것을 예고한다고나 할까. 점성술사들이 사전 정보 없이 그런 새별들을 본다면 무슨 예언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런데 우주선에서 푸르고 둥근 지구를 한눈에 내려다 본 사람들은 과학이보다 오히려 종교적 심정으로 기겁을 한다. 역시 하늘은 종교의 영역인 모양이다. 지금 우주학계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우주다원론은 불교의 우주관에 접근해 있다. 무(無)에서 수많은 우주가 탄생하고 그 우주끼리 보이지 않는 웜홀(Wormhole)이란 통로에 의해 그물처럼 엮여져 있다는... 지혜로운 점성술사라면 앞으로 그런 새별들을 보며 아마 미래의 불교적 우주관을 예언할 것 같다.

김정자(인문인·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논설고문: 고은
인쇄인: 김규석
www.buddhanews.com
www.buddhopia.com
www.mahamail.co.kr
www.yosiamun.com



◇5일 열린 조계종 149회 임시총회에서 종헌 개정안을 심의조차 못해 연내 사면은 불가능해졌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종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계종 사면’ 해 넘긴다

‘종헌 개정안’ 논의 못하고 다음회기로 ‘종회의원 2/3 동의’ 집행부 힘든 숙제

영담, 정남, 광조스님 등은 “이번 총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다. 종헌 개정안을 제출한 총무원장과 종헌특위 위원장이 자리에 없으니 차기 회의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 장적스님 등은 “종단의 가장 큰 현안으로, 이미 146회 총회 때부터 안건으로 상정됐다. 토론 한번없이 내내 넘기다보면 무책임한 것이며, 종도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논의라도 해야 한다고 따졌다. 토론을 지켜본 한 종회의원은 “종헌을 개정해 94, 98년 종단 사태와 관련된 벌징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종회의원은 또 “총회에 종헌 개정안만 상정했지 종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종헌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종

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총회의 분위기를 봐서는 회기적인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다음 총회에서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화개혁회의측에서 제기한 총무원장 부존재확인,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분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면의 결실물로 작용하고 있다. 자숙은 커녕 소송을 통해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에 반대하는 종회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 종단의 화합을 위한 조치로 사면이 논의되고 있으나, 또다른 분란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음도 사실이다. 다만, 종정 해암스님도 “종헌·종법에 따라 사면을 실시하라”는 유시를 내렸고, 총무원장 정대스님도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적이 있어 사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통과된다면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한 사면은 가능하다. 종회 개회에 앞서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종하)는 3일 회의를 열고 총무원이 수정 제출한 종헌 개정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종헌 개정안은 부칙 1, 2조를 신설하는 형식을 취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1조 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①불기 2538(1994). 5. 3. 2543(1999). 1. 25 제정·공포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하여 벌징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는 종헌 제28조 단서 조항(벌징)을 지는 사면 복권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면·경감 조치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사면·경감된 자는 사면·경감일로부터 10년간 종헌·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 취임과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금지한다. 정성은 기자(swjung@buddhopia.com)

訃告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輪宗 前 第2世 宗正 慧蓮堂 一華 大宗師 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4年 12月 3日(陰曆 11月 8日) 午前 7時 30分
忠南 公州市 金鶴洞 323-3 元曉寺에서 圓寂하시었기에 茲以 訃告합니다.
佛紀 2544年 12月 3日
永訣日時: 佛紀 2544年 7日(陰曆11月 12日) 午後 1時(宗團葬)
永訣場所: 忠南 公州市 金鶴洞 元曉寺
茶毘場: 忠南 公州市 金鶴洞 元曉寺 蓮華臺
問議 및 連絡處: 總務院 (02) 733-4445~6 元曉寺 (041) 855-2839, 855-2551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輪宗 前 第2世 宗正 慧蓮堂 一華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總務院長 釋 德山(昌法)